

 국토교통부		<b>보도해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7.24(수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당자	·과장 이재평, 서기관 박진호 ·☎ (044) 201-338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**재건축·재개발 입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'생활적폐'로 정부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.**

- 7월23일 재건축 관련 입찰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- 국토부는 재건축·재개발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**강도 높은 제도개선**을 추진 중이며,
  - \* 국회차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안 발의('19.7.1.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)
  - 이와 관련하여, 기한설정 등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**완화**시킬 수 있는 어떠한 **예외규정도 검토된 바 없음**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,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경우, 입찰비리에 **3회 이상 적발된**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(조합)가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
  - 금품,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벌칙에 대해 적용되는 '자수자에 대한 특례\*'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\* 현행법에도 ‘자수자에 대한 특례’ 조항이 있으며, 벌칙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행정 제재(최대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는 적용 (제113조의3)
- \* 제141조(자수자에 대한 특례) :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 (제공·의사표시·약속·승낙)된 자가 자수하였을 때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

□ 아울러, 국토부는 재개발·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‘생활적폐’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,

- 이와 관련한 비리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수사기관(검·경찰)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머니투데이방송, 7.23.(화)) >

- ◆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
  - 정부의 재개발·재건축 비리 척결노력에도 불구하고, 시장반응 시큰둥
  - ‘삼진아웃’에도 자수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
  - ‘삼진아웃’ 적용 기한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 중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박진호 서기관(☎ 044-201-3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